#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00

발의연월일: 2024. 11. 6.

발 의 자:김용만・민병덕・박홍배

이기헌 • 이훈기 • 강준현

박상혁 · 신영대 · 이인영

김남근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고령자의 금융피해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,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해지고 있음. 미국은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방법과 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음.

이에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적·적극적으로 계좌 거래를 지연시키는 조치와 거래 요청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, 금융회사에게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과 직원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(안 제32조의 2, 제32조의3,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금융위원회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장에 제1절의2(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제1절의2 금융회사의 고령자 보호

제32조의2(거래지연조치) ① 금융회사는 65세 이상의 일반금융소비자 (이하 이 절에서 "고령자"라 한다)가 요청한 금융거래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어 해당 고령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고령자의 계좌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,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(이하 "거래지연조치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- 1.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
- 2.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유사수신행 위
- 3. 제3자가 후견인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유용하고자 하는 경우
- ② 금융회사는 거래지연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령자와 금융감독원에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고령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연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-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통지· 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, 녹취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존하여야 한다.
- 제32조의3(제3자에 대한 통보) ① 고령자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금융거래의 목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자에 대한명단을 금융회사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.
  - ② 금융회사는 고령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처리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해당 금융거래 요청사실을

통보할 수 있다. 다만, 통보대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제1항에 따른 명단에 기재된 자
- 2. 계좌의 공동소유자
- 3.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
- 제32조의4(민사·행정상 면책) 금융회사(그 임직원을 포함한다)는 제 32조의2제1항 또는 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제32조의5(직원의 교육 등) ① 금융회사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.
  - ② 금융회사는 직원에게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대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금융위원회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대응절차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29조(금융소비자 보호) ①・② | 제29조(금융소비자 보호) ①・②  |
| (생 략)            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③ 금융위원회는 고령 금융소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비자의 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제1절의2 금융회사의 고령자 보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ই</u>  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제32조의2(거래지연조치) ① 금융 |
|                    | 회사는 65세 이상의 일반금융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소비자(이하 이 절에서 "고령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자"라 한다)가 요청한 금융거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래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에 따른 금융거래를 말한다. 이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하 이 절에서 같다)가 다음 각   |
|                    |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어 해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당 고령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다고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의 범위에서 해당 고령자의 계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이체,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   |
|                    | 키거나 일시정지하는 조치(이     |

- <u>하 "거래지연조치"라 한다)를</u> <u>할 수 있다.</u>
- 1.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
- 2. 「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 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유사 수신행위
- 3. 제3자가 후견인 또는 대리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위 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유용하고자 하는 경우
- ② 금융회사는 거래지연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령 자와 금융감독원에 거래지연조 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의 목 적을 확인한 결과 해당 고령자 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거래지연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.
- ④ 금융회사는 제2항 및 제3항

<신 설>

에 따른 거래지연조치에 관한 통지·해제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, 녹취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상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한다.

제32조의3(제3자에 대한 통보) ①
고령자는 금융회사가 자신의
금융거래의 목적에 대하여 확
인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
는 자에 대한 명단을 금융회사
에 미리 제출할 수 있다.

② 금융회사는 고령자가 요청한 금융거래가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해당 금융거래 요청사실을 통보할수 있다. 다만, 통보대상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제1항에 따른 명단에 기재된

|                    | <u> </u>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| 2. 계좌의 공동소유자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3. 위임장에 따른 대리인          |
| <u>&lt;신 설&gt;</u> | 제32조의4(민사ㆍ행정상 면책) 금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<u>융회사(그 임직원을 포함한다)</u> |
|                    | 는 제32조의2제1항 또는 제32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조의3제2항에 따른 행위에 관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없으면 민사상 또는 행정상의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           |
| <신 설>              | 제32조의5(직원의 교육 등) ① 금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융회사는 고령자의 금융거래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하고 운용하여야 한다.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② 금융회사는 직원에게 고령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한 대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매년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③ 금융위원회는 고령자의 금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용거래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사의 대응절차 등에 관한 표준        |

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한다.